

#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 개선 방안

송 기 호

영신고등학교 교육정보부 교사

1. 서 론
2. 교구·설비의 의미
3.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 현황
4. 학교도서관 관련 교구·설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 결 론

〈부록〉 :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구·  
설비기준 종합

## 1. 서론

상장기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경관이나 도서관, 휴게시설, 체육관, 강당과 같은 각종 교육시설은 정서적 발달과 자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도서관과 같은 기초시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교구·설비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서 가장 친근하게 사용되며,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능률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교구·설비는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 계획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16개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등에서 정한 학교도서관 지침,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기준,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지침(School Library Guidelines)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교구·설비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교구·설비의 의미

일반적으로 학습지도는 교과과정에 따라서 수행되는데, 교과과정은 단원에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 교재이고, 교재를 처리하는 물질적 수단의 체계가 교구이다. 따라서 교구(teaching instrument)란, 교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교육수단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비(equipments)란 기구·기계·전기·난방·냉방 등과 같이 시설(facilities)에 비해서 작고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의 정의를 보면, 교구란,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교육 매체'로, 설비란 '학교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책걸상, 칠판, 실험·실습대, 교구진열대 등과 같이 교육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비치되어 교육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보조물'로 규정하고 있다(광주광역시 교육청 2004; 대구광역시교육청 20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 측정 연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영역이 상(上)으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이, 하(下)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보다 정보활용능력 측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 영역 등급

과 해당 학교 중·고등학생의 교육성과 측정 영역별 점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설비 영역 등급과 모든 영역의 상관계수 값이 각각 0,184, 0,312, 0,259, 0,256, 0,252, 0,309로 정상관성을 보이며, 99%신뢰수준에서 sig=0.000(<0.01)으로 정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104-105).

<표 1>시설·설비영역에 따른 교육성과 측정 결과

구분	학생수	정보탐색·접근	정보분석·이해	정보종합·적용	정보표현·전달	정보평가	평가
상	153	61.89	71.98	67.32	57.18	66.43	64.96
중	146	63.23	66.99	42.45	52.60	62.49	61.35
하	146	52.89	59.73	56.58	46.36	55.62	54.23
전체	445	59.37	66.32	61.87	52.13	61.59	60.26

### 3.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 현황

현재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법적 기준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디지털자료실 설치 등 목적 사업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제시한 지침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 기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 3.1 법률상의 규정

학교의 시설·설비를 규정하는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에서는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법률 제7120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학교 교구·설비 기준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 ②항에서는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법률 제06906호),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4호) 제3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시설·설비 기준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통령령 제17397호).

제2조(시설·설비 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①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 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교구)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교사의 내부환경) ①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교사의 내부환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2. 소        음 : 55데시벨 이하
3. 온        도 : 섭씨 18도 이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중 교사(校舍)의 면적기준을 정한 <별표 1>에서는 학교급별로 학생 1인당 필요한 최소기준 면적만을 제시하고 실의 종류와 수, 크기 등은 정하지 않아, 학교 설립자 및 운영자가 학교의 설립 목적과 운영방법, 교수-학습방법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기남 1998, 21).

그러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시설 및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는 특수학교도서관의 설치와 면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대통령령 제17115호).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 등의 품목 수량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 1항 관련)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면적 기준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 교실을 겸할 수 있다	20석 이상

### 3.2 시·도교육청 학교교구·설비기준

현행 학교도서관의 교구·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8조 ②항과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특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에서 정한 교구·설비 이외의 교육자료나 재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교구·설비기준안 작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2002: 초등학교 교구설비·기준, 경기도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 : 초등학교·특수학교(급)).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학교 교구·설비에 대한 기준을 단위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단위 학교에 위임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을 고시하는 한 학교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 3.2.1 시설기준

각 교육청이 고시한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우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급)에 설치하는 도서관<sup>1)</sup>의 시설영역과 규격(규모) 그리고 소요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설영역이란 학교도서관을 학교 시설 가운데 어떤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기준에서 보통교실, 체육장, 특별교실, 보건실 등과 함께 공통시설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울산, 경북, 전남, 충북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의 시설 영역구분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서울, 대전, 인천, 강원, 경기, 전북, 충북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교구·설비기준이 학교 급별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같은 교육청에서도 학교급별로 영역 구분이 다른 경우도 있다.

도서관의 규모와 소요기준을 초·중·고등학교별로 나누어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남교육청으로, 132㎡이상 규모의 도서관을 학교당 1개씩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일반교실 1칸 이상, 중·고등학교는 일반교실 1.5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만 66㎡이상 규모를 학교당 하나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도서관을 '학급수×2석×1.5㎡'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신축적인 도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생 1인당 면적이 아닌 학급당 면적을 산출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실 1-2칸 규모의 도서관 면적이 산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도서실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최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서실이 아닌 학교도서관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정한 관중별 명칭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특수학교 도서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규모 및 소요기준을 정하고 있다. 서울, 경북, 전남, 충남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대로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대로를 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교육청은 특수학교 도서관의 규모(면적)와 소요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16개 시·도교육청이 고시한 교구·설비 중 학교도서관 시설관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시·도교육청별 교구·설비 중 학교도서관 시설관련 기준

교육청	영역	면적(㎡)	소요기준	비고	
서울	초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중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고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특수	특별실	20석 이상	학교당 1	
광주	초	공통	일반교실 1실 이상	학교당 1	필수
	중	공통	일반교실 1.5칸 이상	학교당 1	필수
	고				
특수					
대구	초	공통		[학교당1]	
	중	공통		학교당 1	
	고	공통		학교당 1	
	특수	공통		[학교당 1]	
대전	초	공통			
	중				
	고				
부산	초				
	중				
	고				
울산	초	공통			
	중				
	고				
인천	초	공통			
	중	공통			
	고	특별실			
	특수				
강원	초				
	중	특별실			
	고	특별실			
	특수	도서실			설비항목

교육청	영역	면적(㎡)	소요기준	비고	
경기	초	도서실	66 이상	학교당 1	필수 설비
	중				
	고				
	특수	도서실			
경남	초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중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고	공통	132 이상	학교당 1	
	특수	도서실			
경북	초				
	중				
	고				
	특수	도서실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	
전남	초				
	중				
	고				
	특수	도서실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②항에 준함
전북	초	공통-학생지원 시설(도서실 및 정보자료실)	학급수X2석X1.5㎡		
	중				
	고				
	특수	도서실			
제주	초				
	중	도서실			
	고	도서실			
	특수	도서실			
충남	초	도서실			
	중	도서실			
	고	도서실			
	특수	공통	20석 이상	학교실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할 수 있다.	
충북	초				
	중				
	고				
	특수				

### 3.2.2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

학교교구·설비기준은 교육청에서 단일 고시로 학교 급별 교구·설비를 정한 경우와 학교 급별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고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유치원·초등 / 중학교 / 고등학교·특수학교(급)로 나누어 고시하였으며, 인천의 경우에는 초등 / 중학교 / 고등학교·특수학교(급)로, 대전과 충북은 유치원·초등·특수학교(급) / 중·고등학교로, 전북과 강



원은 초등 / 중등(중·고) / 특수학교(급)로 각각 나누어 고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초등·특수학교(급)의 학교교구·설비기준만 고시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구·설비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단위 학교에서 정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급별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적용되는 시점과, 학교교구·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장 학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교구·설비기준은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교과교실, 도서관 등에 대한 설비기준과 각 교과 영역별 교구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교구 기준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구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에 도서 기준을 학생 1인당 8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청이 초등학교도서관에 e-book을 학교당 1권, 전북교육청이 중·고등학교도서관에 e-book 전자도서 시스템을 학교당 1개씩 구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부산, 경남,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과별 교구기준만 있을 뿐, 초·중·고학교도서관에 대한 교구·설비종목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강원도와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도서관에 대한 교구·설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기능과 활용에 따라서 공간을 세분하고 각 공간별로 설비기준을 제시한 교육청은 대구, 경북, 전북 교육청 등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중·고등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 도서관을 ① 문헌자료공간 ②영상자료공간 ③전자자료공간 ④교수-학습공간 ⑤대출반납공간 ⑥종합관리공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구·설비 종목과 규격 그리고 소요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①도서관인테리어 ②인터넷 환경 ③교수-학습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은 ①자료 보관 및 열람용 설비 ②멀티미디어기기로 구분하고 있다.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에 별도의 공간 구분 없이 도서관 단위 영역에 대해서 교구·설비종목과 규격 그리고 소요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자의 사무공간 설치를 기준에 포함한 경우도 대구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도서관 기준에서 실당 1개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도서관의 교구·설비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격과 소요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경북, 전북, 충북교육청 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교구·설비종목과 권장 여부만을 표시하고 있다.

16개 교육청의 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교구·설비종목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교구는 도서와 e-book으로 단 2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설비 종목은 ①열람용 가구 ②서가류 및 자료보관함 ③영상 전자기기 ④PC 인터넷 설비 ⑤대출반납용 설비 ⑥사무용품 ⑦청소용품 ⑧ 편의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구·설비 종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 초·중·고등학교도서관 기준에 비해서 종목의 수가 적고 목록카드함과 같이 불필요한 종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 부산, 전북, 충북교육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설비종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충남교육청은 장애영역별로 도서관에 필요한

〈표 3〉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관련 설비종목

책상·의자	서기류 및 자료보관함	영상전자기기	PC·인터넷 설비	대출반납용 설비	사무용품	청소용품	편의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용 책상 :6인용, 원형 사각</li> <li>열람용 의자</li> <li>PC용 책상</li> <li>PC용 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가 :7단, 5단, 3단</li> <li>잠지가</li> <li>신문대</li> <li>신문걸이</li> <li>사전열람대</li> <li>북추력</li> <li>CD장</li> <li>비디오장</li> <li>파일캐비닛</li> <li>기기보관함</li> <li>수납선반장</li> <li>주름칸막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프로젝션 TV</li> <li>DVD</li> <li>DVD+VTR롬보</li> <li>VTR, VCR</li> <li>실물환등기</li> <li>OHP</li> <li>빔프로젝터 및 스크린</li> <li>오디오</li> <li>헤드폰(셋)</li> <li>음향분배기 (음향분배기)</li> <li>CD경용카세트</li> <li>녹음기</li> <li>앰프</li> <li>스피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교사용</li> <li>:관리용</li> <li>:검색용</li> <li>:학생용</li> <li>PC서버</li> <li>LAN선</li> <li>스위칭허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관리용S/W</li> <li>바코드스캐너</li> <li>코팅기</li> <li>대출반납일력표</li> <li>십진분류표</li> <li>작업대</li> <li>장서인</li> <li>목록카드함</li> <li>카운터</li> <li>넘버링</li> <li>복엔드</li> <li>무인도서반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용 책상</li> <li>사무용 의자</li> <li>컬러 프린터</li> <li>레이저프린터</li> <li>복사기</li> <li>전화기</li> <li>업무용 캐비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공정소기</li> <li>청소용품보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정화기</li> <li>실링팬</li> <li>사물함 :신발장점용</li> <li>소파 : 직선, 원형</li> <li>게시판, 안내판</li> <li>사인시스템</li> <li>커튼</li> <li>압막용</li> <li>조명</li> <li>냉온수기</li> <li>다목적 교탁</li> <li>방난방설비</li> <li>조도</li> </ul>

기타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준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확대 독서기, 점자타자기, 녹음테이프고속복사기, 비디오테이프고속 복사기, 입체복사기 세트, 국부조명시설, 음성장치, 전자프린터 등 8가지의 설비종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 4. 학교도서관 관련 교구·설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1 문제점

시·도교육감이 고시한 현행 학교서관 교구·설비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나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등 학교서관의 기본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 당국의 학교도서관 관련 지침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서관 교구·설비 기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1. 1 운영 목적과 역할 반영 부족

IFLA/UNESCO(2000)의 학교도서관 선언문(School Library Manifesto)에서는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문맹 교육은 물론 정보소양, 교수-학습, 문화계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각 학교의 목적과 교육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학생들에게 독서와 학습의 즐거움 그리고 평생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 지식, 이해, 상상 그리고 오락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물론 모든 매체의 형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 주어야 한다.
- 지방, 지역, 국가 그리고 범세계적인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견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문화적, 사회적 자각과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 지적 자유와 정보접근은 민주사회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핵심적인 개념임을 견지해야 한다.
- 학교도서관의 정보자원 및 서비스는 학교는 물론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독서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국제학교도서관협회의 정책 성명서(IASL 1993)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며, 교육과정을 위한 핵심 시설로 규정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정보적 기능 : 교수, 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국가 및 지역의 네트워크에 핵심부분이다.
- 교육적 기능 : 학습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에 기여한다.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신장시키고, 지적 자유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 문화적 기능 : 심미적 경험, 작품 감상, 창의성 신장, 건전한 인간관계 신장을 통해 평생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 레크리에이션 기능 : 다양한 정보 자료와 가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정책의 제1과제가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확충 및 장서확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 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수적임
  - 학교단위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고,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
- 새로운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필요
  - 수행평가, 재량활동·특별활동 등을 위한 각종 학습자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을 촉진하고,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학교도서관 위상 정립 필요
- 평생학습사회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함

교구·설비 기준의 목적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구·설비기준도 앞서 살펴본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운영목적에 필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6개의 기본 공간으로 세분하여 설비종목을 제시한 대구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교구·설비기준과 교수-학습 환경 등 3개의 기본 공간별 설비종목을 제시한 경북교육청 기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역할을 고려한 교구·설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단순히 설비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8조 (교구)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대통령령 제17397호).”는 규정에 의해서, 각 교과 영역별 교구·설비 기준에 사전 등의 참고도서나 시청각 자료 등의 확보 기준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구에 대한 기준은 단지 대구교육청(초등학교 도서기준 : 학생 1인당 8권), 경기교육청(초등학교 기준 : e-book 학교당 1권), 전북교육청(중·고등학교 기준 - e-book 전자도서시스템 학교당 1개)에 국한되어 있다.

결국 현행 학교교구·설비기준은 정보, 교육, 문화, 레크리에이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교구는 빠진 채, 설비종목의 단순한 나열에 그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운영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4.1.2 학교도서관 발전 추세와 설비 종목간의 부조화

교구·설비기준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설비를 구비할 수 있다하더라도, 현행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미디어센터화나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등 활성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설비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기준 등 학교도서관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현행 기준에 포함된 자료관리 S/W는 학교도서관 정보화나, 사·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보급된 통합목록 시스템(DLS)의 일반화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설비종목이다. 바코드스캐너, 대출반납표, 분류번호판, 북엔드, 목록카드함, LAN 시설, 진공청소기, 청소용구보관함 등도 다소 현실성이 없는 설비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영상전자기기나 시청각 기기 그리고 학습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 4.1.3 소요 규격 및 기준의 비현실성

기준에 포함된 교구·설비의 소요기준은 일반적으로 학교당, 학년당, 실당, 학급당 등으로 제시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전체 학년(생)이 이용대상자이면서, 제한된 실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소요기준을 한정하기가 무척 곤란하다. 좋은 방법은 실의 규모와 소장 자료의 유형 및 규모 그리고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필수 또는 권장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필요수'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서는 열람용 책걸상 및 서가류 및 자료보관함 등을 학교당 또는 실당 몇 개라고 제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의 모양과 크기(원형, 사각)까지도 기준에포함하고 있어서 성장하는 유기체로서의 역동적인 학교도서관 운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PC나 영상기기 등의 사양이나 규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제시해 놓고 있어서 교구·설비 기준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서관 설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성능이 개선되는 설비종목에 대해서는 예산과 활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양(규격)을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 개선방향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교구와 설비 종목의 단순한 배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본 시설 기준과 설비 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향후 학교도서관교구·설비기준 개정 시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2.1 기본 시설 기준

학교도서관이 최소 교구·설비 갖추어 운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정에서 제시된 시설 기준을 참고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보통 단위 학교 당 전체 학생수의 일정 비율을 수용하고, 수용 학생 1인당 면적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보통 전체 학생의 10~20% 이상을 수용하고, 초·중등학생 별로 학생 1인당 면적을 0.89~3.7㎡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이병기 2003, 14).

〈표 4〉 외국의 학교도서관 면적 관련 기준

출 처	학교도서관 면적 기준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Information Power 1998」	◇ 초·중등학교의 구분 없이 500명과 1,000명을 기준 ◇ 1인당 최소 23.6 SqFt(약 2.1㎡)
미국 매사추세츠 주 기준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24%, 중등학교 15% 수용 ◇ 학생당 40 SqFt(약 3.7㎡)
일본 문부성 기준(1999)	◇ 열람실의 정원은 재적 학생수의 10%      ◇학생 1인당 2.1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한국도서관 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의 시설 기준을 학교 급별 학교규모별 총 면적이 아니라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학교도서관의 공간을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공유공간으로 나누어 각 공간요소별 적정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79-80).

〈표 5〉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

구분	면적(㎡)		비고
	복합건물	독립건물	
초등학교	0.89	0.96	학생 1인당 면적은 재적학생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중학교	1.1.9	1.29	
고등학교	1.32	1.44	

〈표 6〉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면적 배준 기준

구분 공간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복합건물(%)	독립건물(%)	복합건물(%)	독립건물(%)	복합건물(%)	독립건물(%)
자료공간	55	51	46	42	41	38
이용자공간	16	15	20	18	27	24
직원공간	16	14	21	20	19	18
공유공간	13	20	13	20	13	20

그리고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에 맞추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실(2002)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적정규모를 학급 및 학생수를 기준으로 신축 및 개·보수 모형 6가지와 증축모형 2가지 등 모두 8가지의 모형별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최소 시설 기준을 교실 2칸 규모로 하고 있다.

〈표 7〉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모형별 학교도서관 적정 규모(신축 및 개·보수모형)

구 분	모형_1 (1실)	모형_2 (1.5실)	모형_3 (2실)	모형_4 (2.5실)	모형_5 (3실)	모형_6 (3.5실)	비 고
학 급 수	6학급 미만	6~12학급 미만	12~18학급 미만	18~24학급 미만	24~30학급 미만	30~48학급미만	
학 생 수	210	420	630	840	1,050	1,260	
수용학생수 (수용학생수비율)	24 (11.4%)	36 (8.6%)	41 (6.5%)	57 (6.8%)	84 (8.0%)	90 (7.1%)	PC이용 학생수 포함
실 면적(㎡)	63	94.5	126	157.5	189	220	

- 신축 및 개·보수 모형 (모형 1~6)
- 증축 모형(모형 7, 8) : 모형 7은 2.5실, 모형 8은 1.5실 복층 규모임
- 위 시설규모는 학교여건 및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실 수는 일반교실(1실 단위면적 : 63㎡)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시설 규모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체 학생 대비 학생 수용 비율을 정하고, 학생 1인당 최소 면적으로 도서관 규모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교과교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생수에 따른 학교규모에 따라서 실 면적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2 기본 설비 방안

구체적인 교구·설비 종목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준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학교도서관의 기본 설비 방향이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을 하나하나 반영한 교구·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FLA/UNESCO(2002)가 제시한 학교도서관 지침(School Library Guidelines)에서는 학교도서관 설비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에 대한 핵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심미적인 외관은 이용자에게 친밀감을 주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욕구를 갖도록 한다. 적절한 설비를 갖춘 학교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안전성
- 적절한 조도
- 도서관의 활동과 이용자 요구, 개별공간에 적합한 기능성뿐만 아니라 견고성, 내구성, 기능성을 갖춘 비품 고안
-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비품 고안
- 최신의 시청각자료기술과 도서관 프로그램, 학교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비품 고안
- 적절한 활용성, 비품과 설비의 안전성, 비용과 재료의 적절성을 고려한 고안
- 다양한 유형의 조직된 자료에 적시에 접근하고, 공정한 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비품 배치와 관리
- 이용자에게 심미적인 매력과 여가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비품 배치와 관리와 깔끔하고 매력적인 안내표시판 구비

특히, 교사(校舍)를 신축하거나 재조직하는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이용이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중심부에, 가급적이면 1층에
- 접근성과 모든 교수공간(teaching areas)과의 근접성
- 소음요소 : 교내에서 소음이 가장 작은 곳
- 채광과 조명을 통한 충분하고 적당한 조도
- 장서의 보존과 쾌적한 작업조건을 위한 적당한 실내 온도(냉난방설비)
- 신체장애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설계
- 자료의 유형과 열람 목적에 적당한 크기의 공간 확보
- : 도서, 소설, 비소설, 표지의 종류(hardback, paperback), 신문, 잡지, 비인쇄 자료별 공간 / 자료의 축적 공간 학습공간 / 독서공간 /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 직원작업공간 / 도서관 데스크
-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장래의 교육과정과 기술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의 융통성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은 지식·정보 사회의 발달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열린교육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열린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



린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 시설과 환경도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김태완 1999, 204-205).

#### 4. 2. 3 교육적 역할을 반영한 교구 기준

학교도서관이 정보, 교육, 독서,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구(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IFLA/UNESCO(2002)의 학교도서관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자료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 수서
 

도서자료의 적당한 수량은 학생 1인당 10권이다. 소규모학교는 학생의 연령, 재능,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 분야의 최신 자료를 최소한 2,500권 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체 자료 중 최소한 60%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비소설자료(non-fiction resources)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대중소설, 음악, 컴퓨터게임,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잡지, 포스터와 같은 여가 목적의 자료를 수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는 윤리적 기준의 합당한 교차점 제한 없이 학생의 흥미와 문화를 반영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자자료
 

학교도서관 봉사 영역에 이용자의 흥미와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전자정보자료에 대한 접근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자료는 인터넷, 특별참고D/B, 전문D/B,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 전자자료는 CD-ROM 과 DVD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분류·목록에 적당한 도서관목록시스템은 국제 또는 국내 서지표준을 채택한 것이어야 한다. 국제 또는 국내서지표준을 채택한 목록시스템은 광역망에 손쉽게 포함되도록 해준다.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지역사회안의 사서교사들은 종합목록에 연결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도서관정의 질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료 결합을 손쉽게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2002)에서 학생 1인 당 적정 도서수를 10권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기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자료 기준을 일반원칙과 함께 학교 급별 및 자료의 유형별로 기본자료수와 연간 증기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74-77).

〈표 8〉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장서 기준

구분	장서의 종류	기본 장서수	연간 증가수	연평균 제적 및 폐기율
초등학교	도서	학생 1인당 5권 이상	학생 1인당 0.5권	기본장서의 10% 이내
	연속간행물	학교당 20종 이상		
	시청각장서	학생 1인당 3점 이상	학생 1인당 0.3점	
	전자장서	학생 1인당 1점 이상	학생 1인당 0.1점	
중학교	도서	학생 1인당 10권 이상	학생 1인당 1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30종 이상		
	시청각장서	학생 1인당 5점 이상	학생 1인당 0.5점	
	전자장서	학생 1인당 2점 이상	학생 1인당 0.2점	
고등학교	도서	학생 1인당 15권 이상	학생 1인당 1.5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50종 이상		
	시청각장서	학생 1인당 7점 이상	학생 1인당 0.7점	
	전자장서	학생 1인당 3점 이상	학생 1인당 0.3점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학교교구·설비기준에서는 현행과 같이 교과영역별로 자료의 소요기준을 분산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학교도서관의 교구 기준에 학교 급별 및 자료 유형별로 기본 자료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4 기본 공간별 설비종목

IFLA/UNESCO(2002)의 학교도서관 지침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계획할 때 고려할 공간 구성요소를 ①학습·연구공간(study and research area space) ②비공식 독서공간(informal reading area space) ③교수공간(instructional area space) ④자료제작·집단프로젝트 공간(production and group project area space) ⑤관리공간(administrative area space) ⑥사무 공간 ⑦도서관 자료의 정리와 시청각기교재의 보관 공간 ⑧비품과 교구의 보관 공간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실이 2002년에 마련한 학교도서관 시설·설비 모형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을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공간과 구성 요소는 〈표 9〉에서와 같이 모두 5개이다.

〈표 9〉 학교도서관 공간 구성별 기능

공 간	기 능	요 소
문헌자료 공간	인쇄매체 관리 열람 모듬, 개별 학습공간	서가, 열람대, 신문·잡지대, 대출용 PC 등
영상자료 공간	시청각 자료 열람, 개별 혹은 집단 열람	VTR, DVD, CD-ROM부스, 개별청취장치
인터넷 공간	인터넷 정보검색 전자자료 활용 수업	학생 및 교사용 PC, 전자자료 보관함, 레이저 프린터
모듬학습 공간	한 학급의 집단 활동	빔프로젝터(선택사항), 열람대, 소파, 실물화상기, VTR
안내 관리 공간	사서교사 업무, 교사열람실 교수-학습자료 제작, 편집	도서검색대, 업무용 PC, 허브 장치, 멀티미디어 제작용 PC, 스캐너 등

또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는 학교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본공간은 ①대출반납 공간 ②문헌자료공간 ③영상자료공간 ④전자자료공간 ⑤대집단학습공간 ⑥종합관리공간 등 이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53).

따라서 교구·설비기준에는 자료의 유형별 열람공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자료 등)과 사무작업공간(사무실 겸 매체제작공간), 대출반납공간, 기기보관공간 등 기본 공간을 두도록 하고, 유형별 열람공간을 대집단 학습이나 독서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5 보다 상세한 정보화 기기 설비종목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및 자료활용수업의 확산으로 시청각자료 열람과 학습자료 제작에 필요한 시청각 기기와 전자 기기의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에서는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하는 주요 정보화 기기를 시청각 기기와 및 전자기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59).

〈표 10〉 학교도서관 정보화 기기

시청각 기기	전자기기	
	컴퓨터와 네트워크	디지털 자료 제작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TR, DVD 플레이어</li> <li>· 슬라이드 환등기</li> <li>· 실물환등기</li> <li>· 빔프로젝터</li> <li>· 프로젝션 TV 혹은 TV</li> <li>· OHP 환등기 및 스크린</li> <li>· CCTV 및 위성방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PC</li> <li>· 교사용 PC</li> <li>· 업무용 PC</li> <li>· 멀티미디어 제작용 PC</li> <li>· 디지털도서관 서버</li> <li>· 프린터</li> <li>· 허브, NIC 카드</li> <li>· 무선 LAN 장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캐너</li> <li>· 칼라레이저프린터</li> <li>· 바코드스캐너</li> <li>· 무비카메라</li> <li>· 디지털카메라</li> <li>· 동영상편집 장치/프로그램</li> </ul>

따라서 학교교구·설비 기준에서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정보교육, 독서교육 등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자료 제작 기기 및 프로그램을 설비종목에 포함시키고 필요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4.2.6 특수학교도서관 기준 개선

학교도서관은 설비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일반 초·중·고등학교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시설기준이나 설비종목 측면에서 열악하다.

따라서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에 맞추어 도서관이 설계되도록 기준에 명시되어야 한다(IFLA/UNESCO 2002). 구체적인 설비 측면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긴급연락설비(예 : 비상램프, 관내 방송용 텔레비전수상기 등), 도서관 이용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호출등, 시각장애인 유도용 설비,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화장실 등을 기본적인 설비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5. 결 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현행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5). 학교도서관의 기대 역할은 이제 단순한 자료의 보관 장소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독서활동과 개별학습 그리고 여가생활의 장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교구·설비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구·설비 기준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목표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도서관의 교구·설비기준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단위 학교에 설치한 ‘교구·설비편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구·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on-line], [cited], [http://www.ken.go.kr/division/09/09-index.htm 2005. 04. 01.]).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아직 부족하고 인적자원은 물론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 자료 등 기본 운영 요소 확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시작 단계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교구·설비기준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운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훌륭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제시한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구·설비 종목과 소요기준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on-line]. [cited]. [<http://www.ken.go.kr/division/09/09-index.htm> 2005. 04. 01.]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7397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 學校圖書館 活性化 綜合方案.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실. 2002. 학교시설 설비 계획 및 모형안.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학교도서관운영편람.
- 김기남. 1998.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한 학교시설·설비기준의 변화. 『교육시설』, 5(3) : 21-24.
- 김태완. “교육 시설 및 설비의 문제와 전망” 한국 교육 문제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204-205
- 김효정. 1997. 학교도서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 : 71-104.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06906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4호.
- 박재윤. 1994. 미래학교의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시설』, 1(2) : 85-87.
- 송기호. 2005.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유호섭, 신일용. 2000. 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 학교(한국, 일본)의 평면분석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시설학회지』, 7(3) : 15-22.
- 이병기. 2003.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구축 방안.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구성·운영방안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재림. 열린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시설 계획. 『교육시설』, 5(3) : 17-20.
-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2000.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운동회[윽김]. 서울: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협회.
- 주삼환. 2002.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학교 모형. 『교육발전논총』, 23(2) : 1-23.

- 조광무. 1997. 열린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현장특수교육』, 4(1): 38-47.
- 조평호, 김기태. 2004.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120호.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통령령 제17115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학교도서관 평가 적용 및 교육적 효과 측정 연구.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IASL. 1993. *IASL 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on-line].  
[cited]. [<http://www.iasl-slo.org/policysl.html> 2005. 04. 01.].
- IFLA/UNESCO. 2000. *School Library Manifesto*. [on-line]. [cited]. [<http://www.ifla.org/VII/s11/pubs/manifest.htm> 2005. 04. 01.].
- IFLA/UNESCO. 2002. *School Library Guidelines*. [on-line]. [cited]. [<http://www.ifla.org/VII/s11/pubs/sguide02.pdf> 2005. 04. 01.].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 유치원, 초등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 중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6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 고등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7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 특수학교·특수학급(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8호).
- 광주광역시교육청. 2004. 학교교구·설비기준: 유·초·중·고·특수학교용(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4-13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2. 대전광역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2-84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3. 중·고등학교교구·설비기준(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3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3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26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2002. 인천광역시초등학교교구·설비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1-189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2002. 인천광역시중학교교구·설비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2-154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2003. 인천광역시고등학교 및 특수학급교구·설비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17호).
- 강원도교육청. 2002. 강원도초등학교 학교교구·설비기준(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02-8호).
- 강원도교육청. 2003. 중·고등학교교구·설비기준(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03-7호).
- 경기도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 : 초등학교·특수학교(급)(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03-

-24호).

경상남도교육청. 2003. 학교교구·설비기준(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03-3호).

경상북도교육청. 200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구·설비기준: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교구·설비기준(경상북도교육청고시 제2003-3호).

전라남도교육청. 2002. 학교교구기준(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01-30호).

전라북도교육청. 2002. 초등학교교구·설비기준

전라북도교육청. 2005. 중등학교교구·설비기준(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5-5호).

전라북도교육청. 2003. 특수학교(급)교구·설비기준(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3-1호).

제주도교육청. 2003. 제주도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제주도교육청고시 제2003-4호).

충청남도교육청. 2002. 충청남도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충청남도교육청고시 제2002- 호).

충청북도교육청. 2004.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04-7호).

충청북도교육청. 2004. 중학교·고등학교 교구·설비기준(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04-6호).

〈부록〉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교구·설비기준 종합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교육청 -1)

구분	도시	책상 의자	서가 류	방송 설비	영상전차기	PC	서버 FC	자료 관리 SW	압박 정음 롤 스크린	프린터	복사기	카운터	계사판 안내판	작업대	파일 캐비닛	냉난방 시설	청소 용구 보관함	기타 설비	
서울	초	0	0	권장	권장	0	0			0	0	0	0	0	0	0	0	0	
	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	0	0	0	권장	0	0			0	0	0	0	0	0	0	0	0	권장
	특수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학급당 1 권장	
광주	초	실당 30조	실당 1		프로젝션 TV 또는 TV 중 1 VTR 빔프로젝터 실당 1	실당 6	실당 1			실당 1	실당 1	실당 1		실당 1 권장					
	중				프로젝션 TV 또는 TV 중 1 VCR 실당 1	실당 5 이상				실당 1	실당 1								
	고	실당 1	실당 1 이상																
	특수		서가: 실당 1 권장		프로젝션 TV 실당 1	실당 1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소요량 권장
대구	초	학생당 8 6인조 실당 2 원형: 학교당 2	서가: 확장수 사천열람대: 학교당 2 복류락: 학교 당 잡지가: 학교 당	스피커 - 학교당 1	TV: 학교당 2 VCR: 학교당 1	학교당 1 열람용: 학교당 4				칼라 학교당 1	학교당 1 권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권장	
	중		서가: 실당 3 잡지가: 실당 1 신문대: 실당 1 사천열람대: 실당 1 권장	실당 1	실당 1 권장 캠코더: 실당 1 권장 음향분배기: 실당 1 권장	검색용: 실당 1 학생용: 실당 6 수업용: 실당 1 대출판납용: 1 자료제작용: 1 권장			흑백: 실당 1 권장 관리자용 레이저: 1 관리자용 칼라크레트: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고	책상: 실당 4 의자: 실당 3																	
	특수	실당 15	서가: 실당 1 권장		DVD+VTR 콤보: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대전	초	6인조: 6명당 1 컴퓨터책상: 실당 2 권장	서가: 실당 10 신문 사천대: 실당 1		비디오: 실당 1 권장 음향분배기 실당 2 권장	실당 1 학생용: 실당 2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실당 1
	중	책상: 실당 5 의자: 실당 3	서가: 실당 5 기타: 실당 1		대형 TV: 1 권장 DVD콤보: 1 권장	업무용: 실당 1 학생용: 실당 5				실당 1	실당 1 권장	실당 1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권장		
	고																		
	특수	소요량				실당 4 권장						실당 1 권장	실당 1	실당 1					
부산	초																		
	중																		
	고																		
	특수	20조-설비	서가: 실당 1 권장-설비		TV: 실당 1 권장 교구 DVDVTR: 실당 1-교구	실당 1-교구						실당 1-광장-설비	실당 1-설비	실당 1-설비					





(울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교육청 - 1)

구분	도	소재지	사기류 (사기 장치가 복유리 사전열람대 등) 자료보관함	방송설비	영상전자기기 (TV, 오디오, VCR, DVD, 환등기, 빔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등)	PC (업무용) (검색용)	서버 PC	자료 관리 SW	암막 검출 스크린	프린터	복사기	카운터	계산기 인판	좌입대	파일 캐비닛	냉난방 시설	청소 용구 보관함	기타 설비
울산	초	○	○	○	○ 권장	○	○			○	○	○	○	○	○	○ 권장		○
	중	○	○	○	○ 권장	○	○			○	○	○	○	○	○	○		○
	고	○	○	○	○ 권장	○	○			○	○	○	○	○	○	○		○
	특수	○	○			○				○	○	○	○					○
인천	초	확상 : 6명당 1 의자 : 1인당 1	사기 : 실당 10 신문잡지대 : 실당 1 사전대 : 실당 1 복유리 1-선택		실당 1-선택	실당 1-선택		실당 1-선택		실당 1-선택	실당 1-선택	실당 1			파일박 스 : 실당 1	실당 1		
	중	확상 : 6명당 1 의자 : 1인당 1	사기 : 실당 1 복유리 1-선택			실당 1		학교당 1-선택			실당 1-선택					실당 1-선택		
	고	필요수량	필요수량	실당 권장	TV,VTR,DVD,오 디오 실당 2-권장 LCD프로젝터 1-권장 프로젝션TV 1-권장	업무용 1 교사용 1-권장 검색용 2 학생용 6		전동스 크린 1-권장	실당 1	실당 1- 권장	실당 1	실당 1 책인물 필요수 량	실당 1 권장	필요수 량 업무용 캐비닛 실당 1	필요수 량-권장			
	특수																	
강원	초																	
	중	○	○	○	권장	○	○			○	○	○	○	○	○	권장		○
	고	○	○	○	권장	○	○			○	○	○	○	○	○	권장		○
	특수	○				○				○	○	○	○					
경기	초	e- book 학교당 1-권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권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권장	학교당 3			
	중																	
	고																	
	특수	소요량	소요량			실당 1 전자자 료열람 용 : 실당 5			A3-실 당 2 컬러-실 당 1	실당 1								
경남	초																	
	중																	
	고																	
	특수	실당 10	사기 : 실당 1			TV(VTR) : 실당 1	실당 1-권장			실당 1	실당 1	실당 1	실당 1					
경북	초중고 공통	최대학년 의 학생수 이상	○ CD 및 테이프보관함 시청각 기기보관함-권장		LCD프로젝터 1 권장 프로젝션TV 1권장 DVD롬보 1권장 오디오 1권장	업무용 1 검색용 1	1-권			레이저 1	권장	권장	권장					
	특수	○	사기		TV 1	○					○	○	○					
	초																	
	중고	○	사기			○				○	○	○	○					
전남	초																	
	중																	
	고																	
	특수	○	사기			○				○	○	○	○					

(울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교육청 - 2)

구분	진공청소기	LAN시설	공기정화기	목욕카드합	비교드스캐너	사물함	전화기	사무용복합기	이동식칼판	스캐너	소파	서서준비실	장서인	대출반납표	분류번호판	커피텐	복합드	코팅기	비교드용프린터	무인도서반납기	실링팬	장애학생용시설 (시각장애)
울산	초																					
	중고																					
	부수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 권장
인천	초	실당 1		목욕카드 : 청구카드-선택							실당 1-선택		실당									
	중	실당 1																		학교당 1-선택	학교당 1-선택	
	고	실당 1-권장			학교당 1-권장			실당 1	실당 1-권장													필요수량 : 권장
	부수																					
강원	초																					
	중고																					
	부수			○	○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경기	초																					
	중고																					
	부수			소요량					실당 1													냉온장수기 : 1
경남	초																					
	중고																					
	부수	실당			실당 1				실당 1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 실당 1-권장
경북	초중고공통	스마트히브 8포트 이상 1-권장			1	권장																
	부수				○	○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전남	초																					
	중고																					
	부수			○	○																	기타장애영역별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전북, 제주, 충남, 충북교육청 -1)

구분	도 서	책 상 의 자	사거류 (서거 잡자거 복추려 사전열람대 등 자료보관함)	방송 설비	영상전자기기 (TV, 오디오 VCR DVD, 원등기 빌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등)	PC (업무용) (검색용)	서버 PC	자료 관리 SW	암막 접합용 스크린	프린터	복사기	카운터	개시판 인쇄판	작업대	파일 캐비닛	냉난방 시설	청소용 구분함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전북	초	책상 : 6명당 1의자 : 1명당 1	자료보관함 : 실당 1 서거 : 실당 10 신문열람대 : 실당 1 복추려 : 실당 1 다목적 교탁 : 실당 1		CD경음 기계트 : 실당 1-관장 헤드폰 : 실당 12-관장 헤드폰받개기 : 실당 2-관장	실당 1				실당 1-관장	실당 1-관장	실당 1				실당 1	실당 1		
	중	e-book (전자 도서 스템) 학교당 1-관장	서거 : 학교당 1 신문기 : 학교당 1-관장 잡자거 : 학교당 1-관장 복추려 : 학교당 1 사전대 :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빌프로젝터/스크린 : 학교당 1 프로젝션TV 또는 LCD프로젝터 텍 : 학교당 1 VIR : 학교당 1 DVD : 학교당 1-관장 1-관장 디지털카메라 : 학교당 1-관장 녹음기 : 학교당 1-관장 원등기 :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0-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3	학교당 1				
	특수	학생당 1	서거 : 실당 1		녹음기 : 실당 10	실당 10					실당 1	실당 1	실당 1						
제주도	초																		
	중	0	0	0	관장	0	0			0	0	0	0		0	관장		0	
	고	0	0	0	관장	0	0			0	0	0	0		0	관장		0	
충남	초	1명당 1	서거 1			1	0	0				1	1		0	관장		0	
	중	0	0	0	관장	0	0			0	0	0	0	0	0	0	관장		0
	고	0	0	0	관장	0	0			0	0	0	0	0	0	0	관장		0
충북	초	최대학년 학생당 1 PC제일 상 : 학교당 3 원형제일 상 : 학교 당 6	자료보관사거 : 학교당 6 열람용(3단서 거 : 학교당 3 낮은서거 : 학교당 3-관장 잡자거 : 학교당 1 사전열람대 : 학교당 1 신문대 : 학교당 1 신문열이 : 학교당 1 CD : 학교당 1 미디어보관장 : 학교당 1 시청각기보관함 : 학교당 1-관장 주름천이어 : 학교당 1-관장 복추려 : 학교당 1 수납산반장 : 학교당 1		LCD프로젝터 : 학교당 1-관장 오디오 : 학교당 1-관장 헤드셋 : 학교당 12-관장	검색용 : 학교당 6 관리자 용 :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학교당 1	학교당 1		파일보관장 : 학교당 1	학교당 1-관장			
	중	0	0	0		0	0				0	0	0	0	0			0	
	고	0	0	0		0	0				0	0	0	0	0			0	
	특수	소요량	서거 1			4				1-관장	1	1							

